

●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1-45호

방송통신표준을 제정·개정·폐지함에 있어 「방송통신표준화지침」 제14조에 의하여 국민,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9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방송통신표준 개정 예고

1. 표준번호 및 표준명

순번	기술분야	표준번호	표준명	구분
1	전파통신 (무선)	KS X 3123	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	개정

2. 주요 내용

□ (KS X 3123)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(개정)

- (개정 목적) “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” 중 6 GHz 대역 Wi-Fi 신규 도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, 6 GHz 대역 Wi-Fi 기기를 포함하여 전계강도 무선기기 등에 대한 시험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시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험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함
- 주요 개정 내용
 - (부속서 F) 무선설비의 안테나 이득 및 시험단자 적용
 - 2개 이상의 안테나를 가진 다중 입출력 기기에 “순환지연다이버시티” 기기 추가
 - (부속서 G)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(WAS)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및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무선랜 적합성평가 항목별 시험방법 개정

- 6GHz 무선랜 기술기준에 도입된 '송신 전 신호감지'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
- MU-MIMO 등 무선랜기기의 시험 시간 단축을 위한 시험절차 등 개선
- (부속서 J)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설비 중 20G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항목별 복사시험방법 개정
 - 침투전력 측정 시 스펙트럼분석기의 분해능 대역폭 설정값 현실화와 보정 계수 보정 방법 추가
 - 시험항목 별 스위칭시간을 통일
- (부속서 L) 전계강도 및 자계강도 무선기기 시험방법 개정
 - 전계 및 자계강도 측정 시 시험주파수 선정방법을 주파수대역 기준으로 개선
 - 30 ~ 1,000MHz 대역에서의 무선기기 출력이 작아서 10m 측정이 어려울 경우, 3m 측정하여 보정하는 방법 추가

3. 의견 제출

-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(참조: 전파자원기획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www.rra.go.kr>)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 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자료

라. 보내실 곳 :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

- 주소 : (58323)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

- 전화 : 061)338-4434, 팩스 : 061)338-4419, 전자우편 : shlee95@korea.kr

※ 홈페이지(<http://www.rra.go.kr>) 이용방법 : 홈페이지 접속 → 민원·참여 → 전자공청회